

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‘복지로’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

- 8월 2일부터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-

8월 2일(금)부터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,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.

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*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‘서비스 신청’ > ‘복지급여 신청’ > ‘장애인’에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‘장애(아동)수당(생계·의료급여)’를 선택하고, 그 외의 사람들은 ‘장애(아동)수당(차상위 등)’을 선택하면 된다.

*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자녀의 배우자, 형제·자매

기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‘장애(아동)수당(차상위 등)’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. 또한,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(복지멤버십)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.

한편,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*을,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.

* 중증장애인에겐 장애인연금 지급, 중증·경증 구분은 「장애인연금법」을 따름

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또는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.

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미만 ②장애아동(중증·경증)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또는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.

<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>

구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
		보장시설 거주자	
중증(중전 1, 2, 3급 중복)	월 22만 원	월 9만 원	월 17만 원
경증(중전 3~6급)	월 11만 원	월 3만 원	월 11만 원

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” 라며, “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 가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복지로 장애(아동)수당 신청 화면
2. 장애(아동)수당 개요
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	책임자	과 장	김민정 (044-202-33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에진 (044-202-332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

복지급여 신청

유의사항

- 반드시 **신청서 제출완료**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.)
- 서비스 신청 전, 관할 주민센터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료의 경우 관할 보건소)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.

서비스 선택 후 다음단계에서 안내되는 **신청 전 주의사항**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장애인

장애인활동지원(신규)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장애인연금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장애(아동)수당(생계·의료급여)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장애(아동)수당(차상위 등)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장애인자립자금대여(복지대상자자금대여)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발달재활서비스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언어발달지원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발달장애(주간·방과후)활동서비스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장애아가족양육지원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장애인활동지원(추가지원사업)

☐ 신청하기

자세히보기

붙임 2

장애(아동)수당 개요

1

장애수당

☐ 사업목적

-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(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)

☐ 대상자

-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또는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
☐ 급여액 : 월 6만원 (시설 거주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)

2

장애아동수당

☐ 사업목적

-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)

☐ 대상자

-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(중증·경증)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또는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
☐ 급여액

구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		보장시설 거주자	차상위계층
중증(중전 1, 2, 3급 중복)	월 22만 원	월 9만 원	월 17만 원
경증(중전 3~6급)	월 11만 원	월 3만 원	월 11만 원